

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411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C(D생)와 피고 사이에 2022. 7.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5가소43552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5,351,652원 및 그 중 1,251,184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2022. 9. 16. 기준으로 9,865,849원 및 그 중 1,251,184원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2) C의 아버지인 E이 2022. 6. 7.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E의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인 F, G, H, C는 2022. 7.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22.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를 비롯하여 카드회사 등에 대하여 1,590여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배우자 E과 2008년부터 1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E이 파킨슨병을 앓아 오랫동안 피고가 홀로 병수발을 해왔다. 배우자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없었고, 소득 없이 201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도덕적 관념에 비추어 악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2. 7.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